

청년 일경험지원사업

검색창에 쳐보세요.

청년 일경험 지원사업



제1권역 :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권



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



고용노동부



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

청년일경험 지원사업

코로나19 충격 등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·중단하고 있어,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


CONTENTS

- 02 지원대상
- 07 지원요건
- 11 지원내용
- 13 지원절차



제1권역 :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권

지원대상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
※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,
성장유망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

근로조건

주 15시간 이상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보험 가입 등

지원내용

근무시간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8만원
(최대 6개월) 지원

- ▶ 30시간 이상 → 80만원+8만원
- ▶ 20시간 이상 → 60만원+6만원
- ▶ 15시간 이상 → 40만원+4만원

신청방법

www.work.go.kr/youthjob 로그인 후 참여신청 바로가기 클릭
→ 담당운영기관 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선택

문의처

E-mail gpsc09036@naver.com

전화문의 031-888-5521~7



지원대상



✓ 지원대상 기업

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- 「고용보험법」 제2호,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- 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 중견기업

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「벤처기업법」)에 따른 벤처기업
※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, 「벤처기업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'벤처기업 확인서'로 입증
- 2 지식서비스산업
- 3 문화콘텐츠산업
- 4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- 5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
※ '주요 품목' 또는 '업종 범위'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
- 6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


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Q

- ✓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(대표자)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✓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4 준용)
- ✓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이면 사업개시일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 준용)

→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

✓ 지원제외 기업

일경험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▶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
- 1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※ 부동산업,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2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 해당하는 업종
※ 단란주점, 유희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※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
▶ 국가 및 공공기관 등

- 1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2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 3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 4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- 6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▶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▶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- **확인방법** :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**제외기간** :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▶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- **확인방법** :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사전정보 공표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「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」
- **제외기간** :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▶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▶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-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(예, 조선업)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

▶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일경험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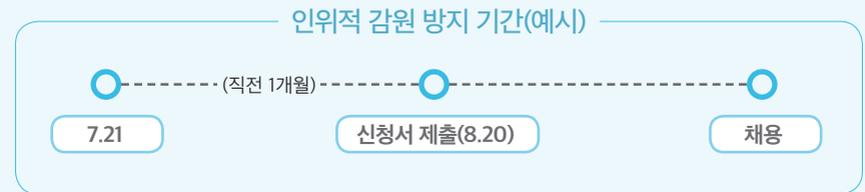
지원요건



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경험사업을 지원한다.

기업 요건

-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한다.
-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.



고용조정 이직

상실사유

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(대분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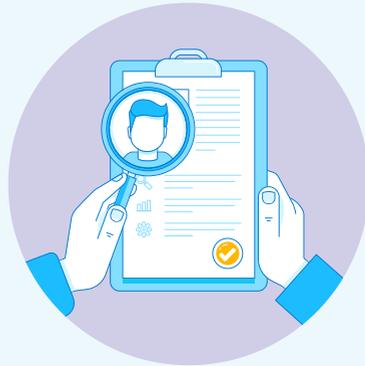
- 23. **(중분류)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 중**
 -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, ②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,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, ④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,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, ⑥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- 26. **(중분류)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중**
 -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청년 요건

지원대상 청년

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※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
- 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

2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.

다만,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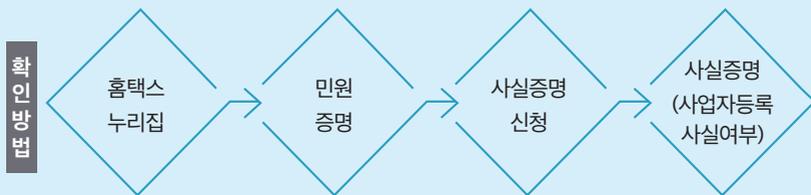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(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
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

기업은 청년의 **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**

※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hometax.go.kr>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


3 근로조건 등

- **근로계약** 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**보험적용**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**근로시간**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
- **임금수준**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- **멘토지정**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·지도·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·운영
- **교육실시** 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·교육 등을 실시하고, 월 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·제출
-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


지원제외 청년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- 2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 또는 일경험사업에 참여중인 자
- 3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5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 -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 -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
관련 사업주 *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4항

- ☑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- ☑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- ☑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- ☑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
(예,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- ☑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- 6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 - 다만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- 7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
 - 다만,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는 가능
 - ※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 - ※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

지원내용 공통



지원기간

참여기업이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.

지원한도

-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※ 소수점 이하는 올림(예, 0.1 → 1명)
 - 다만, 사업 확대 등 필요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-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,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.

지원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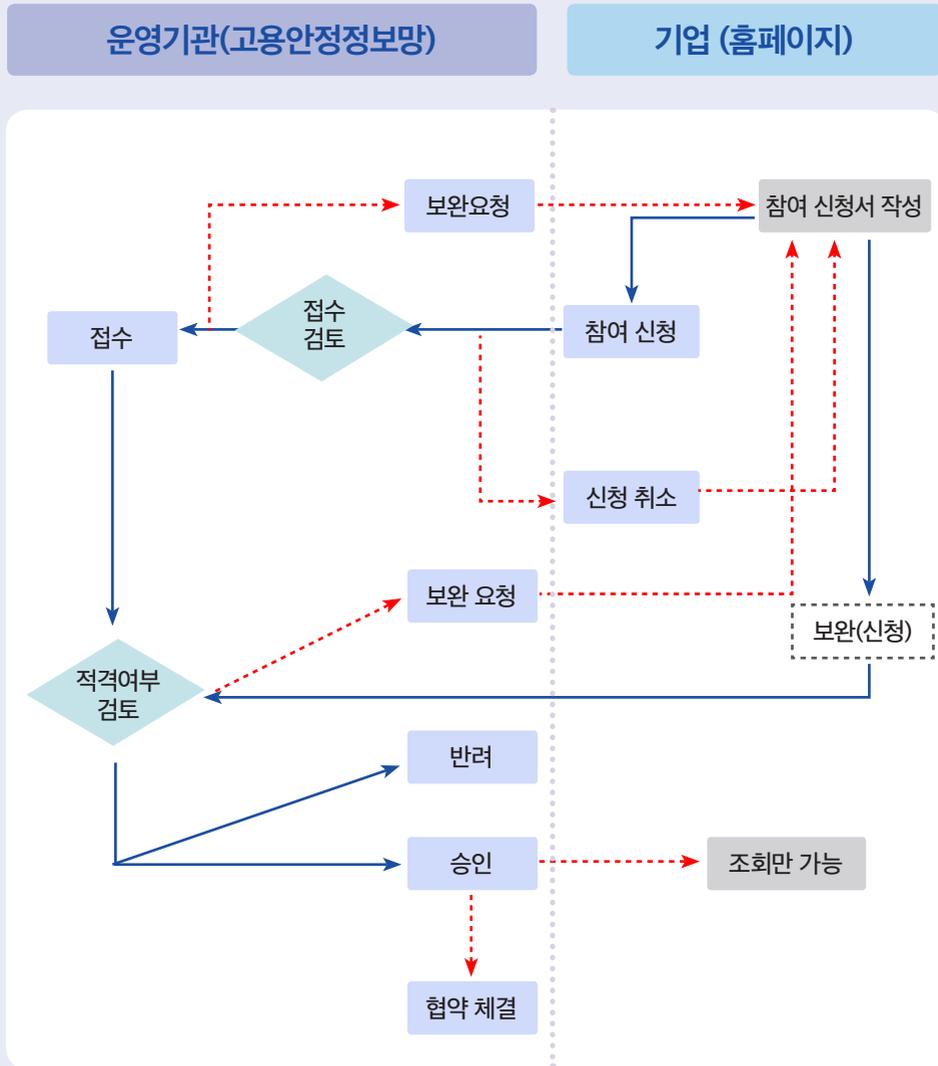
-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 8만원)로 구성된다.
 - 다만,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.

근로시간	총 지급액	인건비	관리비
30시간 이상	88만원	80만원	8만원
20시간 이상	66만원	60만원	6만원
15시간 이상	44만원	40만원	4만원

-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- 단,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지원절차

▶ 참여신청 업무 절차



▶ 홈페이지 - 사업참여관리



- 1 기업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<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>-워크넷 통합계정
- 2 로그인 후 참여신청 바로가기 클릭
- 3 마이페이지 ▶ 사업참여관리 ▶ 참여신청 ▶ 관리 탭으로 이동
- 4 사업참여 신청 버튼 클릭 시 참여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

▶ 홈페이지 - 참여 신청서 작성1

❖ 운영기관 : (사)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지정 필수

- 1 담당 운영기관 선택 : 운영기관 찾기 클릭
- 2 운영기관 찾기 팝업 : 주소 또는 운영기관 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운영기관 선택

▶ 홈페이지 - 참여 신청서 작성2

- 1 사업장현황 : 기업구분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-기업규모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업종 항목 선택
- 2 관리번호찾기 : 로그인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
- 3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: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관리번호 목록 제공

중요 피보험자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수

예) 신청일 : 2020.08.02 신청직전 월말 기준 : 2020.07.31

중요 피보험자수 기준 기준년도 계산됨

중요 목록에서 선택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, 업종, 피보험자수, 기업규모는 화면에 값이 고정되어 수정 불가

중요 소비향락업, 부동산업 등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신청 제한

- 4 담당자 정보 : 사업 담당자의 부서 및 담당 자명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, 이메일을 입력

홈페이지 - 채용자 명단 통보

고용노동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

사업소개 운영기관 알림마당 **1 마이페이지**

마이페이지 사업참여관리(일경험)

사업참여관리(일경험)

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

기업명	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
지사명	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
대표자	전경표
소재지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5, 경기R&DB센터 701호 (이의동)

1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지원금지급조회

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참여신청 현황

등록된 참여신청서가 없습니다.

2 사업참여 신청

- 1 마이페이지 ▶ 사업참여관리 ▶ 채용자명단 관리 탭으로 이동
- 기 신청하여 승인된 참여신청서 목록에서 채용자명단통보 버튼 클릭
- 2 채용자명단통보 버튼 클릭 시 채용자명단 통보서 상세화면으로 이동
중요 기업에서는 참여신청이 '승인'된 후 채용자명단통보 가능

홈페이지 - 채용자 명단 통보서2

채용자 명단 정보

성명 * 주민등록번호 * 연락처 * 선택 - - -

1 채용일 ~ 채용종료일 * 연락처 * 선택 - - -

2 채용유형 * ----- 선택 ----- --- 선택 ---

근무시간 * 주 시간 월보수액 * 원

※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만 가능

수행업무 * 0 Byte / 4,000 Byte

3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청년(채용자)가 작성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 서식 3-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청년용)의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1. 청년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함

2. 청년이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함

3. 청년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함

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의 경우에는 "채용일"만 기재

+ 항목 추가 +5 항목 추가

채용자 명단 통보서 비밀번호

비밀번호 ※ 비밀번호는 영문+숫자 조합 최소 4자리 이상 가능합니다.(특수기호 사용불가)

비밀번호 확인

4 임시저장 명단통보 목록

- 1 채용일, 채용종료일 : 채용일은 청년 지원요건에 기준이 되는 날짜로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므로 정확한 날짜 입력이 필요
중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: 2개월 이상 근로기간 체결
- 2 채용유형 : 참여신청에서 신청한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, 월보수액, 수행업무를 자동 입력
- 3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: 청년이 기업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함
중요 미동의 시 명단통보 불가
- 4 임시저장 또는 명단통보 처리
- 운영기관에서 명단통보서 '확인' 전이면 '신청취소', '삭제' 가능
- 운영기관에서 보완 요청시, 보완(신청) 가능 / 운영기관에서 확인한 이후에는 수정, 삭제 불가